(사)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

수신자 각 회원기관장 귀하
참 조
제 목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6912(2022.06.17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 대호와 관련, 우리 협회는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**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, 4차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**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**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 드리오니 각 회원 기관장님께서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방역수칙 변경일 : **22.6.20(월) 적용***
*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.

나. 조정사항

내 용	기 존	변 경	비 고
종사자 선제검사	주2회 PCR 주2회 RAT	주1회 PCR 검사로 완화	-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-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,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
신규입소자 선제검사	입소시 2회 PCR, 4일격리	입소시 1회 PCR, 음성확인시 까지 격리	-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
접촉 면회	자격기준 (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) 충족 시 허용	자격기준 폐지	-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- 사전 예약제, PCR 또는 RAT음성 확인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
외출 외박	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	필수 외래진료 외, 4차 접종자 또는 2차이상 예방접종과확진이력이 있는 자는 허용	-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-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,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
외부 프로그램	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	전체 장기요양기관 허용	-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 호흡기증상 확인,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

붙임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1부. 끝.

(사)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

간사	사무처장	사무총장	회장
우지웅	정한채	함천우	조용형

시 행 : 한노협 2022-229호 (2022.6.17) 접 수
우 03056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4길 19 신영빌딩 203호 / http://hnh.or.kr
전화 02-2665-2023 / 전송 02-2665-2013 / hnh2023@hanmail.net / 공개